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환경부, 비영리단체 담당 기자
발 신 : 동물권연구단체 PNR
문 의 : 박주연 변호사(jypark929@gmail.com)
시행일 : 2017. 9. 12.(화)
제 목 : [보도자료] 개 전기도살 형사재판 관련 의견서 제출 취재요청 (총5면)

개 전기도살 형사재판 관련 의견서 제출

의견서 제출일시 : 2017년 9월 13일(수) 오전11시

장소 : 서울고등법원 민원실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동물권연구단체 PNR(이하 ‘PNR’)은 국내 최초로 변호사들이 동물권 향상, 입법 개선 활동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단체입니다. (참고: www.pnr.or.kr)

PNR은 지난 2017년 6월 23일 있었던 인천지방법원의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2017년 9월 19일 오후 5시로 예정된 서울고등법원의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제2차 공판기일에 앞서 피고인에 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유죄 판결을 촉구하고자, 법원과 검찰에 위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PNR은 2017년 9월 13일(수)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민원실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위 의견서의 내용을 별첨자료와 같이 요약하여 알려드리오니, 인간이 힘과 비용의 논리로 동물의 ‘생명과 고통’을 등한시하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윤리적 고민을 가지고 계신 기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의견서 (요약본)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2017. 6. 23. 개농장 내 도축시설에서 수십 마리의 개를 전기도살 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결의 요지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한 예시로 목을 매다는 행위를 들고 있을 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잔인’이라는 용어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높으므로 해당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잔인’의 사전적 의미만을 적용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도살방법은 개에게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전살법으로 개를 도축한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앞서 본 동물보호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의 문언적 해석, 입법 취지, 규정체계,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판결은 아래와 같이 범리 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존재하며, 항소심 법원은 반드시 이러한 위법을 바로잡아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동물보호법위반죄로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전살법’과 이 사건의 개 전기도살 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이를 같게 취급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

원심이 유추적용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동물에 대한 합법적 도살이 가능한 경우, 그 도살 ‘방법’에 관한 예시에 불과하다. 이 사건과 같이 식용 목적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데, 위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가축’의 범위에서 개는 제외되므로(개는 원래 위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1985. 6. 28.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을 전부개정하면서 입법자에 의해 제외되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 자체가 아무런 합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며, 결국 합법적 도살이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전살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더구나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살법’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단 시간 내 기절에 이르게 하는 축종별 구체적 기준과 안전 절차(예를 들어, 돼지의 경우 어떤 전압에서도 최소 1.25A 이상의 전류로 뇌 부위를 2~4초간 통전시킬 것)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돼지의 경우 규격화된 전살기를 통해 0.5초 내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되고 곧바로 방혈 절차로 이어져,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는 고통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이 사건과 같은 개 전기도살은 개를 즉시 기절에 이르게 하는 최소 전류량이나 전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전기봉으로 단순히 개를 ‘감전’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마저 한 번에 기절하지 않아 전기봉으로 개의 주둥이에 수차례 통전을 하게 되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개가 겪어야 하는 고통과 공포감이 매우 크고 완전히 무의식에 이르기까지 2분 이상이 걸리며 그 시간을 채 기다리지도 않고 살아 있는 상태에서 가죽을 벗겨내는 작업에 나아가는 경우도 상당수이다.

이처럼 법에 규정된 ‘전살법’과 개 전기도살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서로 다르므로, 원심은 축종의 특성, 죽음에 이르는 시간, 고통 유발, 고통을 최소화하는 안전 절차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두 ‘전살법’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식용으로 이용되는 동물이므로 다른 동물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법규에도 없는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을 반영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였다. 보다 근본적으로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경우 그 방법을 예시해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대상도 아닌 개에 대한 식용 목적의 전기도살 행위 자체가 합법적인 것인지 부터 판단하였어야 하며, 합법적이지 않다면 피고인에게 동물보호법위반의 죄책을 지웠어야 한다.

원심 판결은 ‘전살법’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물에 대한 전기도살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리고 말았는바, 이는 아래 항에서 보듯이 동물에 대한 전기사용을 대부분 금지하는 국제적 추세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동물의 고통을 유발하는 도살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도살을 금지하고, 축종별로 고통을 최소화하는 세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령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동시에, ‘동물의 무차별적 도살을 금지하고, 법률이 정하는 적법한 검사 등을 거친 축산물만을 유통하여 국민들을 방역, 위생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입법취지 또한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아가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적용되지도 않는 다른 많은 동물들에 대한 전기도살을 막을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2.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규정 자체로도 충분히 문언적 해석이 가능하며, 이 사건과 같은 개 전기도살은 위 규정의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목을 매다는 등’이라는 대표적 행태의 구체적 예시로서 문언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미 여러 판결(대법원 2014도2477판결 등)을 통해 그 문언 자체로 충분히 해석, 적용되어 왔다. 더구나 동물보호법 제10조의 규정체계와 함께 해석할 경우, ‘잔인한 방법’의 의미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공포,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즉 ‘가해 순간 곧바로 죽음에 이르지 않고, 고통을 온전히 느끼면서 죽게 하는 행위 또는 가해 행위 전후로 불필요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위 조문의 입법연혁을 보면, 구 동물보호법(2007. 1. 26. 법률 제 8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서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지행위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감소하고자” 하는 이유로 현행 동물보호법의 위 조문 내용과 같이 개정된 것이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개를 감전사시킨 사안에 있어, 국내의 경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6. 9. 이미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고, 국제적으로도 개를 감전사하는 것은 지극히 잔인한 방법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미국 판례는 싸움에서 패한 개를 ‘전살’하는 것은 ‘특별히 잔인한 행위(extraordinary cruelty)’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캐나다 알버타 주 법원 또한 소에게 사용되는 전기봉을 개에게 ‘훈련’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한 것으로 보아 동물학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외 독일의 동물복지법, 동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등에서 동물에 상당한 고통을 가하는 전기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원심과 같은 판단으로는 동물보호법 제8조의 조문 체계상으로도 처벌불균형에 이르게 되는데, 전기봉(도구)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처벌되는 반면, 이 사건과 같이 전기봉을 사용하여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그 죄질이 상해를 입히는 것보다 더 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어 현저히 부당하다.

이처럼 해당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 형벌법규의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단순히 전기로 동물을 감전시키는 행위는 지극히 잔인한 방법이며, 동물이 고통 없이 죽게 하는 도살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입장이자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원심은 ‘잔인한 방법’의 문언적 의미만으로는 해석이 어렵다고 하며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를 ‘잔인한 방법’으로 보지 않았으며, 다른 안전장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장치 등이 있었는지, 당시 전기봉의 전류량, 전문가 의견 등을 더 심리하지도 않은 채 그 결론에 이른 위법이 존재한다.

3. 만에 하나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에도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동물보호법위반 유죄의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제1호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도축 대상이 아닌 다른 동물에게까지도 그 도살행위가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고 계류, 도축하는 개 농장점 도축장에서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위 조항 위반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검찰은 적용법조의 예비적 추가를 통하여 피고인의 동물보호법위반 행위를 빠짐없이 의율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번 무죄 판결은 동물보호법 문언에 따른 해석 및 형벌의 일반예방적 목적을 너무 가볍게 여겨, 오히려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까지도 벌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은 법적 근거 없는 동물의 무차별적 도살을 금지하고 국민들이 섭취하는 축산물의 위생 안전성을 보호하는 법률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판결이며,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도살을 금지하는 세계적인 추세 및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가고 있는 국민의식과 여타 다른 판결에 완전히 역행하는 판결이라 평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2부는 항소심에서라도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부당한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동물보호법위반 유죄의 죄책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합법적 도살이 허용되지 않는 동물들은 물론,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가축들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이 생명을 어떻게 다루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동물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살아 있는 동안 본연의 습성에 따라 살 수 있고, 생을 중단 당할 때에도 덜 고통스럽게 죽도록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